

노란봉투법, 무엇을 놓쳤나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주간지인 <시사인>으로 노란봉투 하나를 보냈다. 노란봉투에는 4만7000원이 들어 있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짊어진 손해배상금 총 47억 원을 10만 명이 4만7000원씩 나눠 내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는 2009년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옥쇄파업을 벌였다. 옥쇄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지부의 몫이 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부는 쌍용차에 33억1140만 원을 물어줘야 했다. 경찰이 낸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면서 손해배상금은 총 47억 원으로 불어났다.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리해고에 반대한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 CJ대한통운(20억 원), 하이트진로(28억 원), 대우조선해양(470억 원)이 쟁의행위에 나선 노조를 대상으로 연달아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노란봉투의 취지를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8개(국회 임기 만료 폐기법안 제외)가 발의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가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손배 청구 제한’으로는 한계…학계도, 국회도 ‘우려’

법안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핵심은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공감하면서도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일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넘친다”면서도 “법적으로 접근할 때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이 법은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민법상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입법이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손해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손배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손배 청구 제한이 위헌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다.

실제 노란봉투법 면면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대목이 일부 눈에 띈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폭력·파괴 행위로 손해를 입혔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조항대로면 기존 법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이나 파괴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다음 노조 간부나 조합원 또는 신원보증인에 대해 어떤 위법행위도 손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중전의 판례와 다수 학설에 명확히 배치된다”며 “이러한 입법은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임종성 의원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봤다. 임종성의원안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에서 ‘이 법에 의한’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검토보고서의 지적은 이렇다.

“이 법에 의한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함으로써 폭력, 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령을 위반한 노조의 행위 모두에 대해 근로자의 손해 책임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손배 책임 범위 제한도 법체계와 안 맞아

노조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폭력 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근로자 개인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민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법 35조는 법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도 함께 손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마찬가지로 함께 손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노조 조합원이나 근로자가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거나 사업장 업무의 공정의 특수성 등에 비춰 손해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개인 근로자 등에 대한 손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조항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노란 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동반된 쟁의행위였더라도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수준의 손배 청구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해외 입법례도 흔치 않다. 조합원 수에 따라 손배 청구액을 제한하는 영국 사례가 있기는 하다. 프랑스는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다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공적 책임의 평등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해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손배 책임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 정해진다. 만약 손배 책임 범위에 상한을 두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떠안게 된다.

강병원의원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검토보고서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전체 금액이 결정된 이상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며 “이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간에 책임의 비중

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상황이다. 손해배상액이 노조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크다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사용자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배 제한’ 대신 ‘정당한 쟁의행위 확대’로 가야”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이 방식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불법파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불법파업이라도 손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식을 고집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확장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국회 환노위 검토보고서도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우리나라는 “쟁의행위가 정당화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송강직 교수)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 방법, 목적 모두 노동조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쟁의행위를 하는 주체는 단체교섭에 나설 자격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의 목적도 근로조건 유지·개선이어야 한다. 쌍용차 사례처럼 정리해고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불법이다.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

송강직 교수는 “다른 나라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법상 절차 위반으로도 정당성을 부정한다”며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한 것이 노조 내부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도 정당성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배상 책임 상한과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입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을 확대하는 것이 손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손배 제한 조항에 가려진 ‘사용자성 확대’ 타당성은?

손배 청구 제한에 가려진 핵심 쟁점은 따로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조항이다. 이는 노동조합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항이지만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논쟁의 중심에서 벗겨져 있다.

이은주의원안에는 근로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면 원청 사업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사내하청노조의 손배 책임이 면제될 길이 열리게 된다. 최근 470여 명의 손배 청구 소송을 당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와 같은 사례를 다시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법안으로는 이은주의원안과 노웅래·양경숙의원안 등이 있다.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노사 간 실무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때문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노조도 함께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청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

지 않아도 되는지, 원청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도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보다 조합원이 많아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원청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하청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위헌 가능성도 있다. 송강직 교수는 “위장 도급이거나 하청 기업이 도급인의 노무 공급 수단에 지나지 않아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청을 하청의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입법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입법이 된다고 해도 사용자단체에서 헌법소원을 내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위헌 가능성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해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배 청구를 허용한다. 그러나 손배 청구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노사 관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손배가 이슈화되는 주요 이유는 노조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봉쇄·압박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권이 법 개정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는 만큼 현재로서는 위헌 가능성을 최대한 덜어내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김명중 입법조사관은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유지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노란봉투법의 입법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법**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